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1 | 2024.09.02 (2024.08.26~09.01)**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08.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26~09.01)**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677.4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습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예방규정’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등이 제출 및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2(월)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에 이어 9/4(수) 및 9/5(목)에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에 대한 인사청문회(9/3),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9/3),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사청문회(9/2),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9/4)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국토위>, <예결위> 등에서 결산 및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기획재정부) 8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11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4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권익위원회) 1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경찰청/금융위원회) 1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8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9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0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의원 등 37인) 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4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5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30
•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3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32
•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3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3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3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3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35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3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36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3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7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6인)	3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38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4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0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4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42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4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44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5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45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46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4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4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47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8.28.)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4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5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51
- 간호법안(대안) 5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52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 5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26~09.01) [바로가기](#)

- [바이오/헬스케어]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안내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서비스업 범위 확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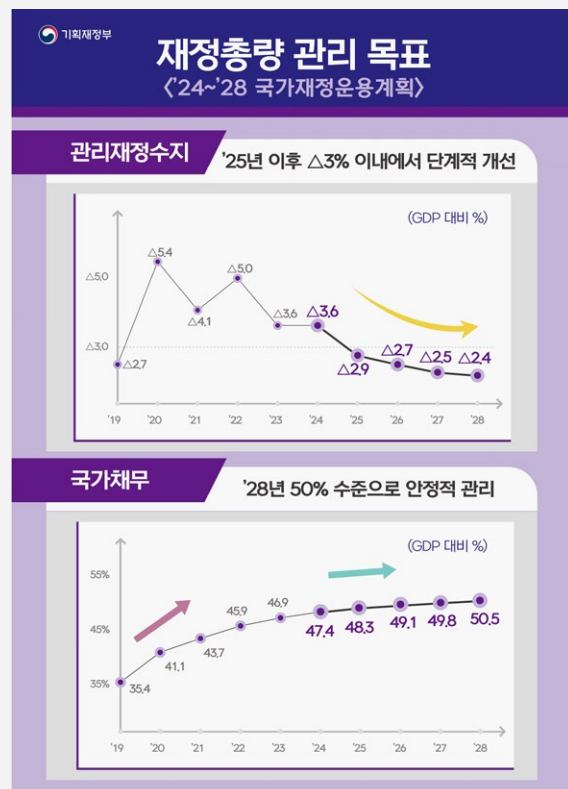
- 생계급여 확대, 자활성공금 신설, 배달·택배비 지원 등 사회이동성 제고
-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 집중투자... 필수외로 확충, 재해대비로 미래도약
- 총지출 증가율 3.2%, 재정적자 $\Delta 2.9\%$ 등 나랏돈 효율적 관리

2024-08-27

정부는 8.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음.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힘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제고했다고 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Delta 2.9\%$ 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밝힘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Delta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

-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세계 선도급 도약 추진 (현 3개 내외 → 6개)
-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대상 5년간 30조원 이상 투자 추진,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화로 신속 사업화 뒷받침
-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동반관계, 신흥기술 황금시간 확보 등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2024-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음

정부는 지난 2022년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음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전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략기술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하였음. 특히,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룰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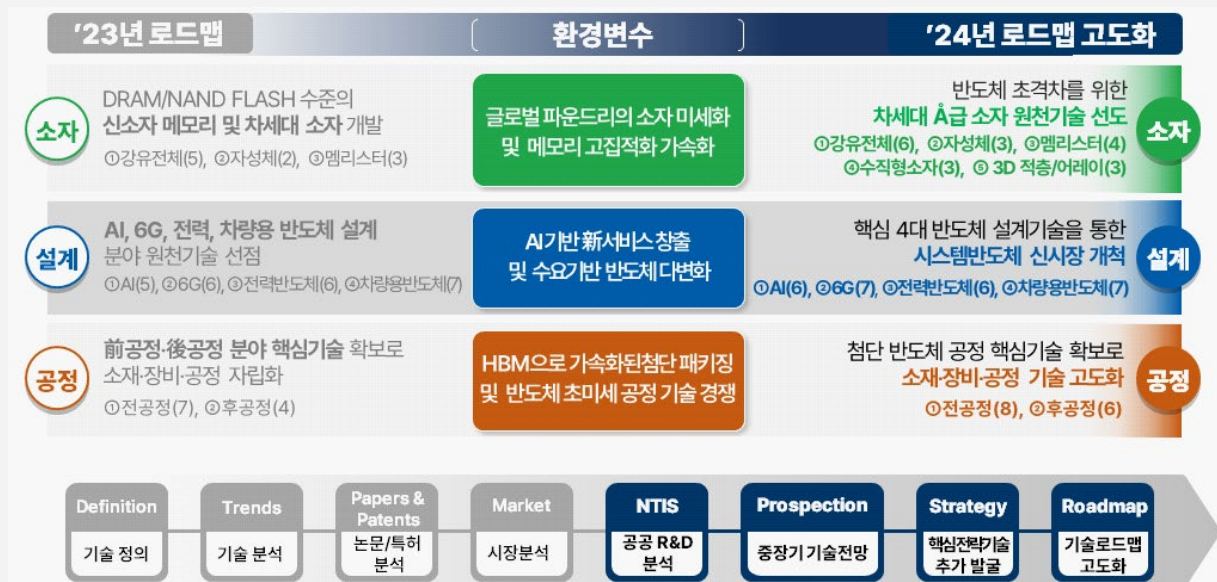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

-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 발표 및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 논의
- 전기전자공학자협회,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주요 기관·기업 기술동향 공유
- 연구성과 공유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반도체 성과 전시회 개최

2024-0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간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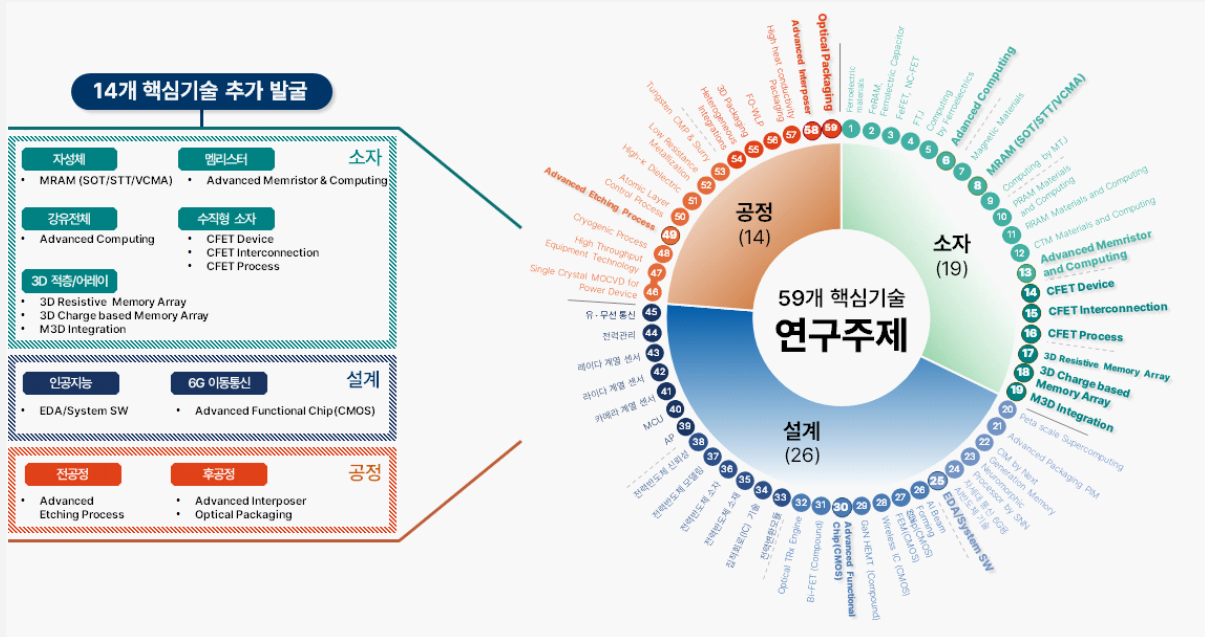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전략인「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연구개발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왔음



이와 더불어,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하였음.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인공지능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 기반 반도체 다변화, 고대역폭 메모리(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보강이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하여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였음. 동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임

* (59개 핵심기술)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

-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 발표
-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 시작... 전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

2024-08-30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新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지속가능항공유(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2년 24만톤 → '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하여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SAF 급유 상용운항 개시('24년~) <국토부·산업부>**

- 8월 30일(금)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
-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② **민관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26년) <국토부·산업부>**

-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8.30)하여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

③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27년~) <산업부·국토부>**

-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

④ **국내 SAF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관계부처 공동>**

-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
- 또한,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하여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

⑤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 <산업부>**

-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

⑥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산업부>**

-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

⑦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산업부>**

- 산업부는 석유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8.7일 시행)을 통해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쉘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

⑧ **SAF 탄소감축 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제정, '24.2.20) 하위법령(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2024-08-28 시행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 및 실시방법,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자의 기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실시방법 (제3조)

-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업 현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가상융합기술 등의 이용·보급 현황,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등으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③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자의 기준 (제4조)

-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④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인력·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⑤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및 마련 절차 (제15조 및 제1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7 시행

외국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전검토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01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간을 그 상한 실적 확인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기간이 지난 다음 연도’에서 ‘그 상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연장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과징금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8 시행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64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지는 법인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하도록 하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8 시행

안전점검 실시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을 제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0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결함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이용 우선권을 제공·판매할 수 있는 상품·단체·기간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 (제2조의6제3항)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과 그 밖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중대한 결함은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으로 규정하며, 그 밖의 결함은 안전 관련 시설의 파손,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공간의 바닥 파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구·장비의 부식 또는 파손 등으로 규정함

② 비회원제 골프장 우선 이용권의 제공·판매가 가능한 범위 (제21조의2 신설)

-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던 것을, 숙박시설의 이용과 골프장 이용을 연계하여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상품이나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로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서 우선 이용권의 제공·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8-28 시행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여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고용 관련 편의시설 중 하나로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때에 해당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교대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교대 근로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시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7 시행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경찰청
금융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28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 절차,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의 보존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주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 절차 등 (제2조의4 신설)

-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을 점검·개선하도록 함
- 금융회사는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신설)

-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신설)

-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③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 주체 및 절차 등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의3 신설)

- 금융회사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확인 요청서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공유를 요청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확인 통지서를 ‘정보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가 연결된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함
-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자금융업자가 그 계좌가 연결된 금융회사에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확인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그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종료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8.29. ~10.08.

연구개발기관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사항인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외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

또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제5항제3호 신설)
 -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②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 (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
- ③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안 제27조제3항제4호)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 목 조항을 삭제함
- ④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
 -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
- ⑤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 (안 제41조제2항제1호)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전화: 044-202-6925, 팩스: 044-202-6048)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27. ~10.07.
-----	-------------------	------------------------

「먹는물관리법」이 개정('24.2.20)에 따라 위임사항 정비('25.2.21) 및 제도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정지 기간 신설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신설에 따라,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또는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7조 개정)
※ (유사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

②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제도 도입

-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 연기 근거 마련(제18조제5항 신설)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2-6871, 팩스: 044-201-7189)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30.
~10.14.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 (안 제4조제5호)

-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소 필요

②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 (안 제18조제3항)

-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5조의 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③ 반출정화 규정 정비 (안 제19조)

-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④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 (안 제19조의2제1항)

-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⑤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안 별표3, 별표7)

-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⑥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 (안 별표6의2, 별표11의2)

-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⑦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 (안 별표6의3)

-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⑧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 (안 별표10)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 명시

※ 문의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202-6871, 팩스: 044-201-7189\)](tel:044-202-687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8.29.
~10.0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 (안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 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삭제

②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등급 상향대상 신설 (안 제12조 제2항 개정,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별표1 개정)

-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그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③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상시 관리·감독 근거 신설 (안 제15조,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시 보고 및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함

④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상향규정 (안 제18조의6)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시행규칙으로 운영해 온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1, 팩스: 044-201-5574\)](tel:044-201-377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29.
~10.0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오류와 제도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 (안 제1조의2, 제11조제3항, 제16조제5항, 별표1, 별표3, 별지 제3호서식)**
- ②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 삭제 (안 제18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주민등록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함
- ③ **녹색건축센터 지정 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명칭 정정 (안 제10조)**
 - 녹색건축센터 지정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정부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관리하므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tel:044-201-3771)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29.
~10.0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 (안 본문 및 별표, 서식)
- ② 법 제1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위임받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를 규정 (안 제4조의2)
- ③ 녹색건축법(법률 제20337호) 개정에 따라 인증취득 의무대상의 인증결과 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인증 명판 설치 위치 및 게시 의무를 임의제도로 완화 (안 제9조제2항)
- ④ 원활한 인증제 운영을 위해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 신설 (안 제14조의2)
 -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인증평가 기준 등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인증운영위원회 부설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⑤ 인증등급 완화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제14조의3)
 - 영 제12조제4항(개정안)에 따라 4등급 인증 취득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완화신청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대상 건축물 구분, 신청 및 검토 절차 등을 신설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tel:044-201-3771)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8.26.
~10.07.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예방규정’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위험물 예방규정과 다른 법령 유사 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 (안 제63조제2항)
 - 예방규정 작성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 ②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 (안 별표 4 I제1호다목, XI제1호다목 등)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등 제명과 용어 정비

※ 문의처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전화: 044-205-7422\)](tel:044-205-742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성권 의원 등 37인)

2024-08-27 발의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본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공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대내외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조)
- ② 외국본인이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 협회, 법인, 기업, 기구, 기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하며,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대리인, 대표자, 피고용인, 외국본인으로부터 명령, 요구, 지시나 통제를 받아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본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독, 지휘, 통제, 재정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또는 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함 (안 제2조)
- ③ 외국대리인이 활동할 수 없는 범위와 금지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함 (안 제5조)
- ④ 외국대리인은 등록서류와 증빙서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 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⑤ 외국본인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본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던 효력은 즉시 상실됨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 ⑥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관리, 외국법자문사, 종교나 예술 또는 과학적 연구 등의 활동에만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로 한 자 등은 외국대리인 등록을 면제함 (안 제9조)
- ⑦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에 관하여 고시하고, 희망하는 이에게 등록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국내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게 조사 및 지원,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 ⑧ 법무부장관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가 허위, 누락, 변조된 경우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
- ⑨ 외국대리인은 회계장부, 활동기록, 접촉명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자료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한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대리인 또는 관계가 있는 제3자는 활동 자료를 은폐, 폐기, 말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안 제16조)

- ⑩ 외국대리인은 대상자에게 외국대리인 신분을 밝히고, 인쇄물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사본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7조)
- ⑪ 외국대리인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20조)
- ⑫ 이 법 시행 전부터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벌칙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제3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2024-08-27 발의

현재 전세계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음. 대전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특히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코스피 전체 상장법인이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세계적인 흐름과 괴리가 있고, ‘사업보고서’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로 ESG 정보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장법인의 기업 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1인)

2024-08-27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대부업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부업을 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있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대부업을 방지하기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금업법」을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는바, 불법대부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을 하기 위한 순자산 요건으로 5,000만엔 이상을 설정하며, 영업소마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대부업무취급주심자)를 배치하여 대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불법대부업 방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하여 영업소마다 대부업취급자격인을 두어 대부업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대부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3조의5, 제5조의4, 제19조 등)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08-28 발의

현행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고,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험금은 2001년도에 결정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금융업종별로 보험사고 위험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동일한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인상 시 금융업종 간 위험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의 우려 등의 이유로 보험금 상향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규정 시 금융업종별로 보험금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금 상향 기반을 마련하여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2024-08-29 발의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7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2024-08-26 발의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024-08-28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3% 25%의 통합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규정이 미비함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달성을 위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자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시설투자 및 사용 비용에 대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024-08-29 발의

미래의 교통수단은 전통적인 기존의 교통과 다르게 IT기술 및 통신기술과 접목되어 첨단화, 고급화될 것으로 전망됨.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공간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용량증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편의성 증대, 안정성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모델과 개념이 등장하고 있음

미래 이동수단(Mobility)은 개인의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 뿐 아니라, 개인용 비행체(PAV), 도심항공이동수단(UAM)과 친환경·초고속 운송수단인 수소 트럭, 하이퍼루프,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초연결을 실현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및 물류 이동 수단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과 운송수단은 산업간의 융합 및 상호간에 공통의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모빌리티 분야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연결,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제조 및 서비스 기술과 산업의 빠른 융복합 추진을 위한 미래 이동 수단 및 운송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조선업의 경우 중국은 친환경 등 미래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 기술이 개인 육상 이동 수단인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 간의 융합, 모빌리티 기술의 공유 및 기술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빌리티 관련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어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30 제출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 (안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안 제21조)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③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 (안 제42조제2항)

-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④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안 제76조제3항)

-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⑤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 (안 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⑥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안 제254조제2항·제7항·제8항)

-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⑦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 (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⑧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안 제270조의2제2호)

-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4-08-30 제출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4인)

2024-08-27 발의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

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1인)

2024-08-26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딥웹과 다크웹 등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의 예방 및 사전 차단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청소년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에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 제4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책임법안(황희의원 등 10인)

2024-08-27 발의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게 됨.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기술적 수준의 경이로움 너머로 개인정보의 침해, 알고리즘 왜곡으로 인한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이용,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③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책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5조)
- ④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의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 ⑤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이의 제기권 및 책임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⑥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08-27 발의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2024-08-27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누구라도 눈 깜짝할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확인시키고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은 족히 넘어 혹시나 ‘내 사진 혹은 내 자녀 사진도 이용된 것은 아닌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는 분위기임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임.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하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합성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신설 및 제44조의7 등)

인공지능(이하 “AI”라 함)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제조·물류·에너지 등 특정 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야별 활용이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 난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5조)
- ④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⑦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22조)
- ⑨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함 (안 제25조)
- ⑩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6조)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2024-08-26 발의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촌, 용달·택배·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 (안 제66조의3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2024-08-30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외교·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65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2024-08-28발의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 (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2024-08-27 발의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3인)

2024-08-27 발의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8인)

2024-08-29 발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08-29 발의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8조의3 신설)
- ②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8조의4 신설)
- ③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보완함 (안 제224조의3)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29 발의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등
16인)

2024-08-29 발의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지만, 증가하는 발전설비의 양을 수용할 전력망이 부족하여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임

그러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9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망 구축을 부과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는 등 수차례 관계 법령이 개정됐지만, 원전·화전 중심의 중앙집중형에너지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체계로 급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음. 특히 한국전력공사 중심으로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체계는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국가가 주도하여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전력망 확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주민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산업계 및 상업시설, 일반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끌고 미래형에너지체계로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08-30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됨

이에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고효율·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역할 및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항제4호)
- ③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및 제5조)
- ④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의무이행 및 결과 공표 등의 근거를 신설함 (안 제7조)
-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및 민간단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이용 관련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및 제70조)
- ⑥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민간사업자의 의무를 통일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독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⑦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의 근거를 신설함 (안 제14조, 제15조)
- ⑧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여 에너지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에너지관리지도의 경우도 개선 명령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제22조·제23조)
- ⑨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아닌 에너지사용자가 진단기관을 통해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 및 제22조)
- ⑩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확대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미활용 열에너지의 범위와 유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
- ⑪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효율측정, 신고 등 의무사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8조·제73조 및 제82조)
- ⑫ 효율관리시험기관과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통일하고 시험기관 관리강화를 위하여 취소된 시험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안 제31조·제34조 및 제36조)
- ⑬ 자동차와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등의 부분을 분리하여 수송부문으로 신설함 (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4-08-27 발의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호의2, 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 ②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 ③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 (안 제27조, 제36조 제1항제2호의3·제2호의4, 제38조제2호의2)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27 발의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 (안 제37조제2항 신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 (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 ③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4 신설)

- ④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안 제43조의5 신설)
- 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49조)
- ⑥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 (안 제109조제2항)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2024-08-23 발의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57조의2제1항)
- ②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7조의2제2항)
- ③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1조제5호의2)
- ④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탄소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산업전반의 효율적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등 체계 정비에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6조·제18조 등)
 - 현재의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럽연합의 제품환경 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
- ② 환경발자국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함 (안 제18조제2항)
 - 환경발자국 인증기관의 심사원 보유 기준을 2명 이상에서 상시 근무하는 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
- ③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의2 신설, 제21조의2 및 제31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 업무의 범위 명시
 - 환경발자국 운영 업무규정의 작성 및 승인에 대한 근거 마련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탁 근거 마련
- ④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26조)
 - 환경발자국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기관·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포함
- ⑤ 환경발자국 인증기업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 환경발자국 인증제품 사후관리 시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법에 명시
- ⑥ 환경발자국 산정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안 제26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29 발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파견·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5인)

2024-08-29 발의

2024년 8월 1일에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의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무공해자동차가 제작되어야 하나, 현행 법령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성능,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2조제 16호의2·제46조의2 신설 및 제58조제3항)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 사고로부터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안 제58조의9제2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2024-08-29 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폭염·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안 제52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29 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30 발의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4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2024-08-26 발의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은 전국 968개에 달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승차구매점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과 안전 문제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해서 대부분 승차구매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승차구매점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지 외부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이 상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큼. 게다가 작은 연면적으로 인해 이용차량 수용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외부로의 교통 악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승차구매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규모 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2024-08-28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였지만,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하여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예외로서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리츠 투자이익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주식 청약을 해당 지역 주민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편, 리츠 영업 인가 후 2년 이내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위기·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 또는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주식 분산 시기를 공모 시점으로 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 산업 발전 및 국민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영업인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8제2항 및 제3항 등)
- ② 부동산 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제한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를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함 (안 제15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4-08-28 발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 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08-29 발의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2024-08-29 발의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등 가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경우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전체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 등 특가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심한 소비자가 막상 항공권을 결제하는 경우 각종 옵션 사항이나 부가서비스가 더해져 실제 부담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또한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4.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2024. 8. 28)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8-28 의결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세월호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상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함 (안 제50조, 제51조 신설)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04조의2 신설)
-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112조제4호 삭제)
- ④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2024-08-28 의결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024-08-28 의결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8-28 의결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요율은 대출금 중 연 비율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연 대상 금융회사는 현재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 비율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은 급증해왔음. 2023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59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익을 기록한 바 있음. 이에 반해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대출 차주인 개인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있음.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민금융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는 지적임

게다가 여전히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의 경우 그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을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2024-08-28 의결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및 제45조의5제2항제1호·제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24-08-28 의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11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대안)

2024-08-28 의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간호사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들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들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 (안 제3조)
- ③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④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를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⑤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및 제20조)
- ⑥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 (안 제25조 및 제26조)
- ⑦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안 제27조)
- ⑧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및 제30조)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2024-08-28 의결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 (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08-28 의결

주요 내용으로는

- ①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 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2024-08-28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안 별표 제2호(95)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2024-08-28 의결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 근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외의 지역에도 이 규정의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지역별 택시 운영실태 조사,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외 사업구역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규정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개정안의 단서 규정을 현행대로 하도록 삭제하고,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19일까지 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적용례를 신설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2(월) 14:00	-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9/4(수)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9/5(목)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9/3(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
법사위	전체회의	9/3(화) 10:00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복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9/4(수) 본회의 산회 후	-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위	전체회의	9/3(화) 09:3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법안 의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9/3(화) 10: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9/4(수) 10:00	- 법안 심사
	예산결산심사소위	9/6(금) 10:00	- 결산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9/2(월) 10:00	- 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사청문회
	예산결산심사소위	9/4(수) 11:00	- 결산 심사
	예산결산심사소위	9/5(목) 11:00	- 결산 심사
	전체회의	9/5(목) 14:00	- 결산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9./2(월) 10:00	-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법안 상정, 결산 상정,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문체위	예산결산심사소위	9/3(화) 10:0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전체회의	9/5(목) 10:00	- 법안 의결,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9/3(화) 10:00	- 결산 심사
	전체회의	9/4(수) 10:0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9/3(화) 10:00	- 결산 상정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	9/4(수) 11:00	- 결산 심사
	전체회의	9/5(목) 11:00	- 결산 의결
여가위	전체회의	9/4(수) 14:00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 법안 상정,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예결위	전체회의	9/2(월) 10:00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상정 *종합정책질의
		9/3(화) 10:0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종합정책질의
		9/4(수) 11:0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부별심사: 경제부처
		9/5(목) 11:00	-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월) 07:30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토론회	박지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월) 10:00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 전략 토론회	서영교·이춘석· 오세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월) 13:00	전기차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 경차 활성화	문진석·정준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2(월) 15:00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이용우·김태선· 정혜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3(화) 09:30	기후 위기 시대 상하수도 혁신방안 국회 토론회	박홍배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3(화) 10:00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박정·김성한· 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3(화) 14:00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	엄태영·서삼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4(수) 14:00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2차 : 플랫폼 노동자와 노동권	박 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4(수) 14:00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서영교·김주영· 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4(수) 14:00	AI와 DX의 미래 정책 방향	이해민·조승래·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9/5(목) 09:30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방향 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9/5(목) 10:00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방안	구자근·박성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5(목) 11:00	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권성동·윤후덕· 배준영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5(목) 14:00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김한규·박수영 의원실 등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9/6(금) 10:00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할 것인가?	윤상현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6(금) 10:00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황운하·윤종오· 문진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9/6(금) 14:00	국내외 에너지 메탄 감축 협력 강화	김한규·김소희· 서왕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9/2(월)	「팩트북」 제111호 발간 - 국민연금 개혁	국회도서관	
	9/2(월)	「The 현안」 제26호 발간 - 기본소득, 개념과 실험		
	9/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4호 특집호 발간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9/4(수)	「금주의 서평」 제694호 발간 - 도서명 : 새우에서 고래로 - 저자 : 라몬 파체코 파르도		
	9/6(금)	「현안, 외국에선?」 제90호 발간 -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9/5(목) 13:00	“여권통문과 여성 참정권 운동”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대회의실
	9/5(목) ~ 9/6(금)	국세수입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9/2(월)	「Futures Brief」 제24-06호 발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단과 새로운 가능성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53호 발간 -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국회도서관	
	8/28(수)	「The 현안」 제25호 발간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8/28(수)	「금주의 서평」 제693호 발간 - 도서명 : 어쩌면, 사회주택 - 저자 : 최경호		
	8/29(목)	「현안, 외국에선?」 제89호 발간 -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등장한 세 인물		
	8/26(월)	「NABO Focus」 제75호 발간 -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 여건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8/27(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5호 발간 - 재정경제 이슈와 관련된 주요 통계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8.26~09.01)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27(화)	바이오/헬스케어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안내
8/27(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디지털 토큰 서비스업 범위 확대
8/30(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